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2025. 1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202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CONTENTS

1. 개요	04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08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	11
4.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업무처리 흐름도	18
5.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21
[붙임]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24
[참고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법령	25
[참고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조달청 양식	28

1. 개 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배경

-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발주기관은 통합사업자에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까지 일임하고, 통합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목적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는 시스템 통합(SI)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 통합(SI)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이 통합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구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07년~)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가이드의 목적

- 본 가이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위 법령 등에 규정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안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법적 근거

구분	법령 및 고시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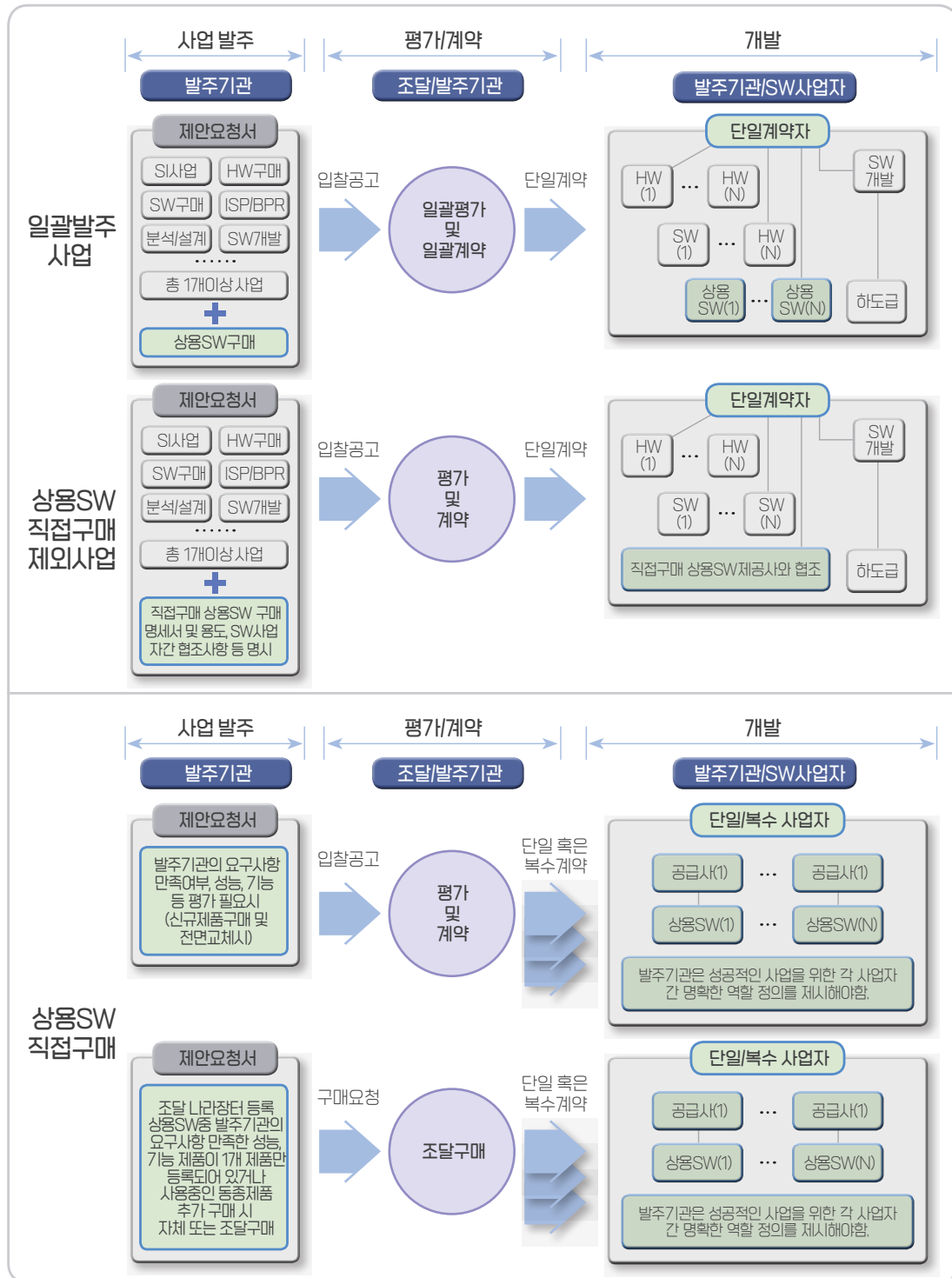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변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23.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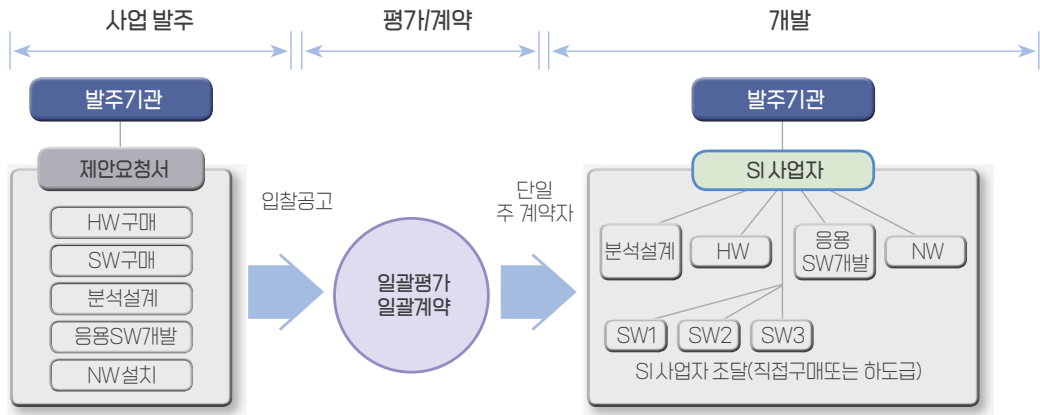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로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된 소프트웨어(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된 SaaS 포함)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로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직접구매 제외사유에 대한 조달청 등의 검토를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	-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검토 대체 가능	-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검토 대체 가능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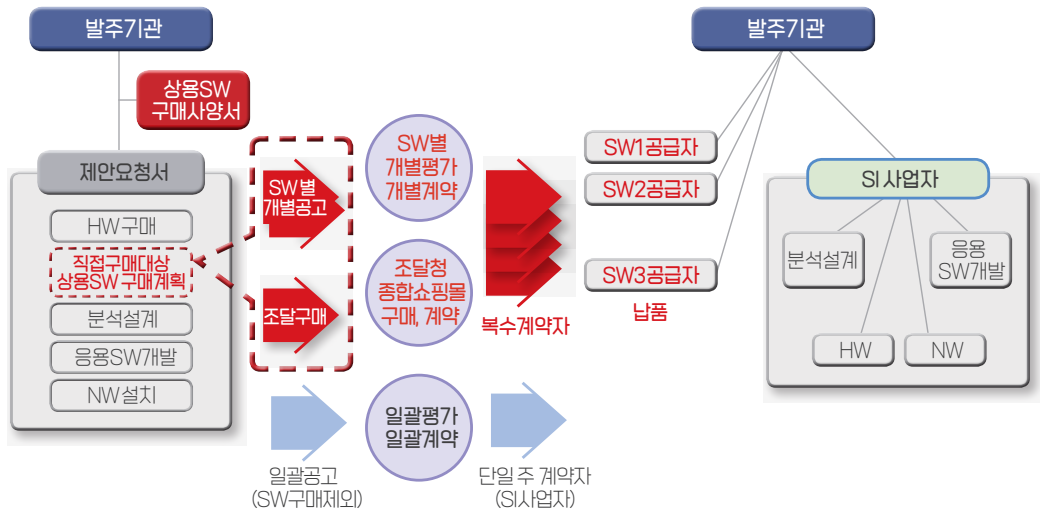
-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상용으로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SI 사업, 상용SW 구매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
- “시스템통합사업”(SI사업, System Integration)이란 시스템 구성 요소(HW 구매, SW 구매, 분석설계, 응용 SW 개발 등)를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통합을 수행하는 SI사업자 등을 말한다.
- “일괄발주”는 시스템통합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또는 “분리발주”란 일괄발주 형태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조달구매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발주



상용SW직접구매 (구, SW분리발주)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 대상 사업(1차 조건)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는 총사업규모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 국가기관등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별지 2호 서식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대상 소프트웨어(2차 조건)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 ②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
- 이 중 ①과 관련하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도 직접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시가 개정되었다.('23.5월)



- ②와 관련하여, 동일 소프트웨어를 다량 구매함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하여 직접구매 대상이 된다.
- 한편, ②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가 국가인증을 획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차 조건과 2차조건의 관계

- 1차 조건(대상 사업) 충족 시 2차 조건(대상 소프트웨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이며,
-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중에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이다.

1차 조건	2차 조건
3억원 이상 (VAT 포함)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소프트웨어(SaaS 포함) - 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 (5천만원 이상,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 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
-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약약을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

▶ 대상 사업 제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여 일괄발주가 가능하다.
- 이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상 소프트웨어 제외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에 규정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 다만,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제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조달청 등 검토기관에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외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제외사유 미리 검토 요청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를 일괄 발주하려는 경우 직접구매 제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조달청 등 검토기관에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발주 형태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경우 조달청에,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 또는 과업심의위원회(상위기관이 없는 경우)에 미리 검토를 요청하며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는 조달청 등 검토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한다.

구분	조달발주	자체발주	
검토기관	조달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상위기관 또는 주무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3호를 준용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제외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①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기존 서버의 증설/업그레이드로 타 소프트웨어제품으로 연계 및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이 경우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재활용하여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타 소프트웨어 구매 시 기존 코드에 대응하는 코드부터 새로 개발함에 따라 과도한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존에 이미 적합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시험을 마친 상황에서 새로운 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새로 시험을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이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 일정이 기존 대비 20%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직접구매 제외사유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역시 필요하다.

- ③ 단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선행사업(ISP, 설계사업 등)을 통해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가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타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경우 선행사업에 대한 변경수행(ISP재실행 또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 단순히 통합 발주(일괄 발주)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직접구매(분리 발주)함에 따라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달청 등 검토기관은 직접구매 제외사유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기본설계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공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공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미리 검토 서식 대체

- 국가기관등이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직접구매 여부를 표기하여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표기된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의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의 제출로 미리 검토 대체가 가능하다.
- 미리 검토 대체가 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은 조달청 등 검토기관에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대신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제출하고 검토기관은 서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의 비율이란 DBMS, WEB, 서버보안, 백신 등 제품 품목으로 구분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 예정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예시1)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DBMS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XX원 이내 ○ BMT실시예정
2	EDMS	2식	직접구매 () 제 외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XX원 이내 ○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3	WAS	2식	직접구매 () 제 외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XX원 이내 ○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m]

(예시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DBMS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 XX원 이내 ○ BMT실시예정
2	백업소프트웨어	3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 XX원 이내 ○ 조달쇼핑몰구매
3	EDMS	2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 XX원 이내 ○ 조달쇼핑몰구매
4	통합모니터링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 XX원 이내 ○ 조달쇼핑몰구매
5	그룹웨어	2식	직접구매 () 제 외 (√)	00시스템의 개발소스를 재활용하여 연동된 기능을 개발하며, 따라서 기존 DBMS와 데이터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으로 사용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 XX원 이내 ○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식대체
6	WAS	2식	직접구매 () 제 외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도입예정 YY년 MM월 ○ 약 XX원 이내 ○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식대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업무처리 흐름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사업의 단계별 업무절차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은 1. 소프트웨어사업 유형 및 사업비 산정 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조사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외 사유 미리 검토 요청 4. 사업발주의 4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소프트웨어사업유형 및 사업비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 총사업규모(HW·소프트웨어 도입 가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 산정 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사업 기준 확인(3억원 이상)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인지 여부

○ 2단계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조사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 도입 대상 소요 소프트웨어 조사(품목, 추정가격, 국가인증, 조달등록 등)
 -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 및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확인(SaaS 포함)
 - 단일 소프트웨어가격 5천만원이상 또는 동종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합산이 5천만원 초과이면서, 도입대상 소프트웨어 품목이 국가인증* 획득 여부 조사
 -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구매시기, 예산규모 등 명시 필요 (조달의뢰시에는 조달양식 참고)

○ 3단계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외사유 미리 검토 요청

- 제외사유 “미리 검토” 의무조건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제외(통합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검토(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 * 단, 전체 직접구매대상 상용SW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 제외사유 미리 검토 요청
 - 조달발주 시 조달청에 미리 검토 요청
 - 자체발주 시 상위기관 등에 미리 검토 요청
- 제외사유 :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 등

< 제외사유 예시 및 필요 준비 서류 >

(예)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재활용하여 개발해야 해서 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면 기존 코드를 재활용 못하고 신규개발에 따른 비용 증가

* (근거제출) 과업지시서, SW구성도, 기본설계서, 소스코드 일부, ERD 등

(예) 선행사업(ISP, 설계사업 등)을 통해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가 수립되어 타 SW로 대체할 경우, 선행사업에 대한 변경수행(ISP변경 또는 설계변경)이 필요, 현저하게 비효율적

* (근거제출) 선행사업자료(기본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시험평가서, 소스코드 일부 등

(예) 긴급재난지원 명령 등에 따른 신속 집행 필요

* (근거제출) 집행명령서 등

(예) 기 구축사업을 통해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채택되어 시험을 마쳤으나, 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 따른 시험기간이 전체 사업일정을 기존대비 20% 이상 지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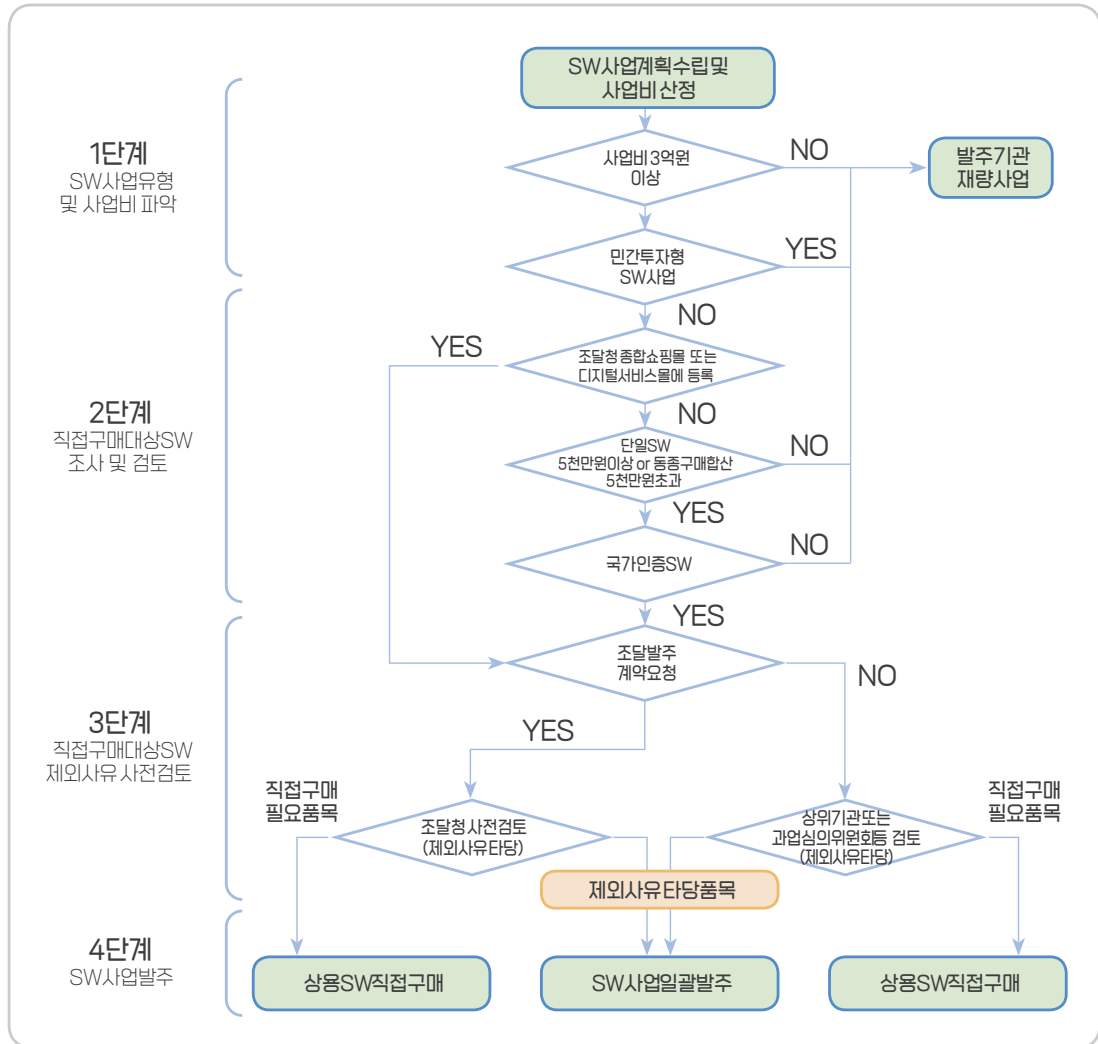
* (근거제출) 기본설계서, 시험평가서, 개발 일정표 등

(예) 상용SW도입에 따른 단순커스터마이징(설치범주내)에 따른 현저한 일정지연 (불수용 사유)

○ 4단계 : 사업발주

- 발주기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발주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미리 검토를 받은 경우 비교란에 해당기관 명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업무 프로세스



5.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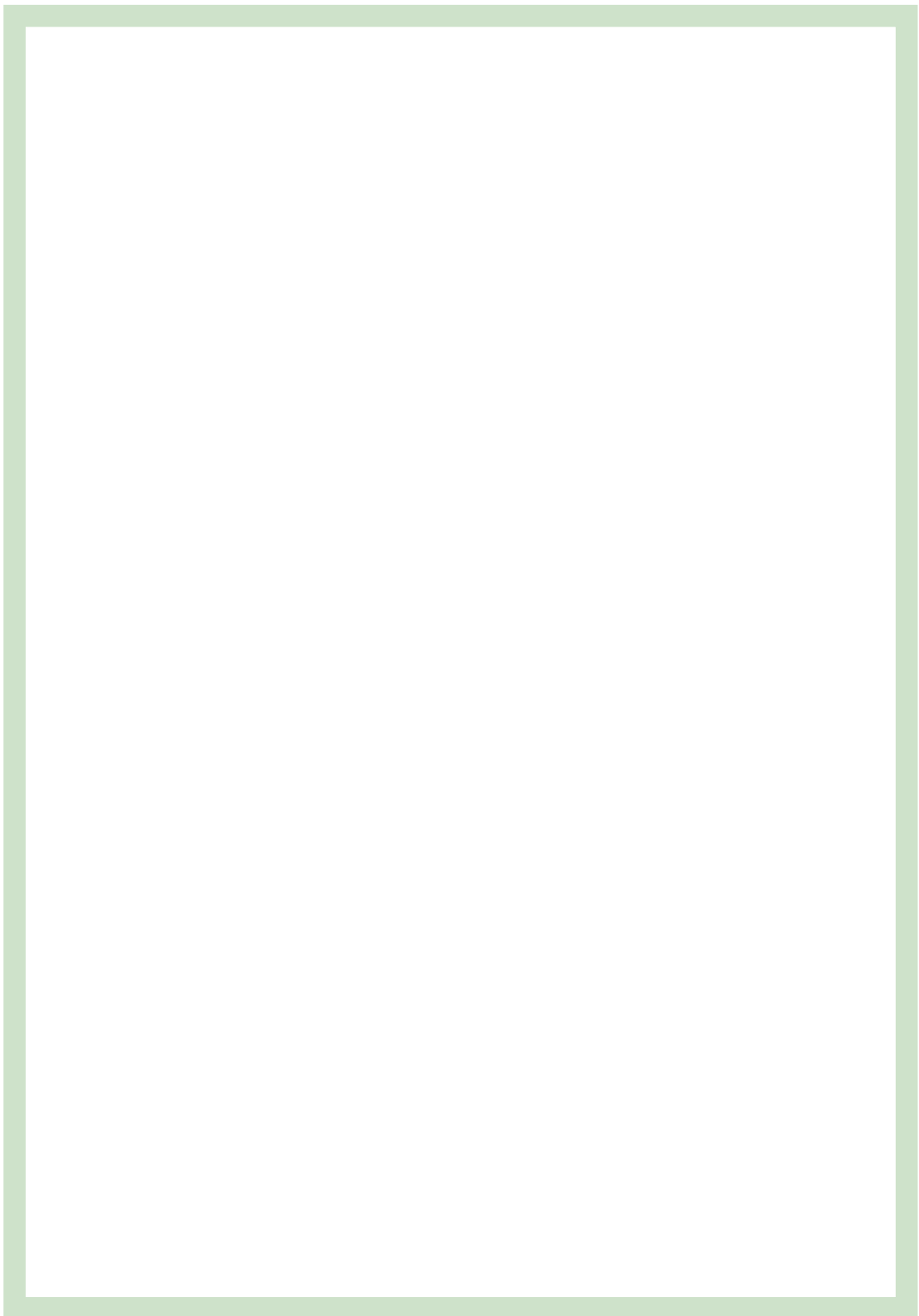
-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2. 상용소프트웨어 제품명 및 계약금액, 수량, 계약방법
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 계약정보 등록 방법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정보센터 - 소프트웨어제도자료실)에서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안내서'를 참조하여 등록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5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록

[붙임]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고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법령

[참고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조달청 양식



[붙임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직접구매 [] 제 외 []		
2			직접구매 [] 제 외 []		
3			직접구매 [] 제 외 []		
4			직접구매 [] 제 외 []		
5			직접구매 [] 제 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 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협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4호를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구매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5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참고2] 직접구매 제외사유 미리검토 관련 조달청 양식

(검토절차 및 양식은 나라장터 자료실 또는 디지털서비스몰 공지사항 참조)

SW 품목별 직접구매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SW품목(기능)명 :

SW제품명 :

문항	검토항목	검토 방법	해당여부	비고
1	위 품목이 직접구매 비대상SW 제품에 해당하는가?		예()15) 아니오()	아니오→문항 2
1.1	위 품목의 특성이 장비(HW 포함), 용역,이전/이관, 등 해당하는가?	1)	예() 아니오()	분류코드 N[]
1.2	1.1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필요자료를 확인하고 준비되었는가?	2)	예() 아니오()	확인 후 문항 7
2	위 품목이 개발SW제품 (非상용 SW)에 해당하는가?		예()16) 아니오()	아니오→문항 3
2.1	위 품목이 SW개발 등 개발SW에 해당하는가?	3)	예() 아니오()	분류코드 N[]
2.2	2.1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필요자료를 확인하고 준비되었는가?	4)	예() 아니오()	확인 후 문항 7
3	위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인가?	5)	예()17) 아니오()	예 → 문항 6
3.1	쇼핑몰에서 위 품목을 검색했던 방법과 기록은 확보되었는가?	6)	예() 아니오()	문항 4 계속
4	위 품목의 가격이, 또는 동일 품목으로 다량 구매일 경우 합산 가격이 기준 금액(5천만원) 미만인가?		예()18) 아니오()	아니오→ 문항 5
4.1	위 품목이 기준금액(5천만원) 미만이라면			분류코드 N01
4.2	위 품목의 "가격산출내역서(또는 원가계산서)"는 준비되었는가?	7)	예() 아니오()	확인 후 문항 7
5	위 품목이 미인증(GS, CC, NEP, NET, 국정원 인증/검정) 제품인가?	8)	예()19) 아니오()	아니오→문항 6
5.1	위 품목이 미인증 제품이라면			분류코드 N02
5.2	인증 사이트에서 위 품목을 검색한 방법과 기록은 확보되었는가?	9)	예() 아니오()	확인 후 문항 7

6	위 품목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분류되는데, 조달청 사전검토 과정에서 직접구매 제외를 신청할 것인가?	10)	예()20) 아니오()21)	아니오→종료
6.1	직접구매 제외사유 코드와 사유분류는 확인하였는가?	11)	예() 아니오()	사유코드 E[]
6.2	분류 사유에 해당하는 필요 증빙은 준비되었는가?	12)	Yes() No()	
6.3	제조사(최소3개사 이상)의 검토의견서가 준비되었는가?	13)	Yes() No()	
6.4	소프트웨어 “품목별 직접구매 제외사유서”는 작성되었는가?	14)	Yes() No()	확인 후 문항 7
7	유형별로 “사업 대상 전체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반영하고 종료	22)		새 품목이 있으면 문항 1

※ 작성방법

- 1) “직접구매 제외사유별 유형 분류 및 정의서(안)”의 분류코드 N11~N14 참조
- 2) “직접구매 제외사유별 판정 기준(안)”의 분류코드 N11~N14 참조
- 3) “직접구매 제외사유별 유형 분류 및 정의서(안)”의 분류코드 N21~N23 참조
- 4) “직접구매 제외사유별 판정 기준(안)”의 분류코드 N21~N23 참조
- 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물 포함) 검색
- 6)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물 포함)에서 위 품목을 검색할 때의 조건들을 목록으로 정리
- 7) 가격산출내역서는 SW품목 단위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가가 명시되어야 함
- 8) 인증 사이트(swit.or.kr)에서 위 품목을 검색하되, 동일 품목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인증제품군으로 간주
- 9) 인증 사이트(swit.or.kr)에서 위 품목을 검색할 때의 조건들을 목록으로 정리
- 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 자료실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함
- 11) “직접구매 제외사유별 유형 분류 및 정의서(안)”의 사유코드 E01~E30 참조
- 12) “직접구매 제외사유별 판정 기준(안)”의 사유코드 E01~E30 참조
- 13) [양식] 참조
- 14) 소프트웨어 “품목별 직접구매 제외신청 사유서(안)” 양식 참조
- 15) 비SW제품이라면, 즉 SW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접구매 비대상 (분류코드 N11~N14)
- 16) 개발 SW 즉, 상용 SW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접구매 비대상 (분류코드 N21~N23)
- 17)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물 포함) 등록 제품이 확인될 경우, 직접구매 대상
- 18) Yes(기준금액 미만)일 경우는 직접구매 비대상(분류코드 N01)
- 19) Yes(미인증 제품)일 경우는 직접구매 비대상(분류코드 N02), No(즉, 인증 제품)일 경우는 직접구매 대상(분류코드 D02)
- 20) 직접구매 제외 품목 (사유코드 E01~E30)
- 21) 직접구매 대상 품목 (분류코드 D01 또는 D02)
- 22) 사업 대상 전체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해당 품목의 분류 및 식별 내용을 반영하고 종료하되, 다른 품목이 남아있으면 처음 문항부터 다시 시작

정보화사업 SW 구매계획

1. 정보화사업명 :

2. 직접구매 비대상 소프트웨어 현황

번호	품목 ¹⁾	수량	금액 ²⁾	분류코드 ³⁾	분류사유 ⁴⁾	제출서류 ⁵⁾

3. 직접구매 제외 상용소프트웨어 현황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⁶⁾	수량	금액 ²⁾	제외사유코드 ⁸⁾	직접구매 제외사유 ⁹⁾	제출서류 ⁵⁾

4. 직접구매 상용소프트웨어 현황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¹⁰⁾	수량	금액 ²⁾	구매방법 ⁷⁾	내 용	비고
				쇼핑몰()		
				입찰()		
				쇼핑몰()		
				입찰()		
				쇼핑몰()		
				입찰()		

5. 검토 제출자료 총괄표

필수	과업내역	①제안요청서 () ②사업계획서 () 중 선택 ③과업지시서 ()			제출여부 (○/×)				
		검토 제출자료 (품목별로 제출자료에 해당내용이 있는 경우 ○/×표시)							
번호	품목	자가 점검표 ¹¹⁾	검색 결과	제안요청서 RFP	시스템 구성도	SW 구성도	업체 의견서	산출 내역서	기타

※ 작성방법

- 1) '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으로 표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로 분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기재
- 2) 품목별 가격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재하되, 복수 수량일 경우는 합산 금액을 기재

- 3)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로 분류되지 않는 근거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 (N0*, N1*, N2*)
- 4)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로 분류되지 않는 근거 사유를 상세하게 서술
- 5) 분류사유 또는 제외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준비된 내용을 기재
- 6)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가운데 직접구매 제외 소프트웨어를 기재
- 7) 대상분류코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포함)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구매해야 할 대상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쇼핑몰(√),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구매 해야 할 대상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입찰(√)에 표기
- 8) 제외사유코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구매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코드(E0*, E1*, E2*)를 기재
- 9)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목별 직접구매 제외신청 사유서(양식)" 작성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상세 사유와 관련 증빙은 "품목별 직접구매 제외신청 사유서(양식)에 기재
- 10)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가운데 직접구매 예정 소프트웨어를 기재
- 11) 품목별 직접구매 자가점검표를 각 품목별로 필수적으로 제출

SW 품목별 직접구매 제외사유서

번 호	품목
제외사유 (사유 코드)	쇼핑몰 구매 시 등록제품명
제외신청 상제사유	
제출 증빙서류	
참고사항	

[통합발주 검토의견서 양식 샘플 예시]

상 호 명(제조사명)

주 소 : 전화(직통) 팩스 담당자(연락처H·P)

수신자 : 수요기관명

참 조 :

(경 유)

문서번호 : 신청업체 내부문서번호 기재

제목 : 통합발주 검토의견서 제출(조달청제출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사업자는 관련사업 중 해당 소프트웨어 공급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분리 발주 제외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나. 제 조 사 : (유통사의 경우 제조사 명시)

다. 관련사유 (★예시) (사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양식은 자유)

SW품목명	비디오 송출 S/W		
제품명(모델명)	○○○○○○○ v1.0		
요구규격	제품규격	검토의견	비고
500이상 동시접속	최대 100 유저	별도 시험검증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	붙임 1, 4 참조
restAPI 지원	소켓 통신	통신방법 상이	붙임 2 참조
출력해상도 4k 이상	최대 1920×1080	출력해상도 미달	붙임 3 참조

- 붙임
1. 커스터마이징 계획서 1부.
 2. 인터페이스 상세내역서 1부.
 3. 제품 매뉴얼 1부.
 4. 커스터마이징 견적서 1부. 끝.

상 호 명(제조사명)

대표자(인)

[미인증제품 통합발주 검토의견서 양식 샘플 예시]

상 호 명(제조사명)

주 소 : 전화(직통) 팩스 담당자(연락처H·P)

수신자 : 수요기관명

참 조 :

(경 유)

문서번호 : 신청업체 내부분서번호 기재

제목 : 미인증제품 통합발주 검토의견서 제출(조달청제출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사업명	S/W 품목명 (제외사유서 품목명)	제품명	제조사	비고
0000	00000000	000 V1.0	000	

2. 위 관련사업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로 위 제품은 GS,CC,NEP,NET의 인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상 호 명
대표자 (인)

직접구매 제외요청 상용SW 사전검토 결과 회신 양식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요청한 제외사유 (코드)	검토의견		검토결과
			사유(코드)	증빙서류(코드)	
1	WEB S/W	5천 미만 (N01)	C3	A6	디지털서비스물 제품
2	WAS S/W	오픈소스 (N31)	C2	A4	통합발주 가능
3	DBMS S/W	중설 (E01)	C2	A4	통합발주 가능
4	증감현실 S/W	5천 미만 (N01)	C2	A4	통합발주 가능
5	방화벽 장비	장비 (N11)	C2	A4	통합발주 가능
6	백신 S/W	라이선스연장 (N34)	C1	A4	통합발주 가능
7	GIS S/W	상호운용 (E05)	C3	A8	디지털서비스물 구매
8	경영정보 S/W	개발비중 (N22)	C2	A4	통합발주 가능
9	이중화 S/W	D01	-	-	디지털서비스물 구매
10	가상화 S/W	D02	-	-	직접구매

※ 위 제품 중 통합발주 가능 SW에 대해 조달청에 계약요청(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7조제8항에 따른 '별지 서식'을 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후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용SW 직접구매 사전검토 결과 유형 >

구분		검토 결과	검토코드
사유 내용	통합	제외사유의 내용과 근거가 구체적이고 검토기준에 부합함	C1
		해당 검토사항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설명요건을 충족	C2
	직접구매	해당 검토사항에서 요구하는 제외사유 요건에 부적합	C3
증빙 서류	통합	제출 서류가 잘 제출되었고 자료로부터 제외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A4
	직접구매	제출 서류로 사유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A5
		제출 서류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제외사유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A6
	통합	업체의견서 제출 내용에서 제외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A7
	직접구매	업체의견서 제출 내용에서 제외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A8
구매 방법	쇼핑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된 SW 구매	D1
	입찰등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D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2025년 11월 인쇄
2025년 11월 발행

발 행 인 : 박윤규

발 행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기 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성미, 서원준

Tel : 043.931.5353 Fax : 043.931.5329

- 본 가이드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라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소프트웨어it.or.kr) ▷ 정보센터 ▷
소프트웨어제도자료실
- 본 가이드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법제도팀 Tel : 043.931.535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